

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 2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을 반영하여 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화학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함

주요내용

-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(안 제11조)
-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(안 제12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2. 6. 14. ~ 2022. 7. 4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학물질 관리법」 제7조의2” 를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예방대책·비상대응계획” 을 “예방대책·사고대응계획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비상계획” 을 “사고대응계획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록·단원보건소장” 을 “상록수·단원보건소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
나.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
제11조의 제목 “(비상계획의 수립 등)” 을 “(지역화학사고대응 수립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산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(이하 “비상계획” 이라 한다)” 를 “법 제23조의4에 따른 안산시 화학사고대응계획(이하 “사고대응계획” 이라 한다)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상계획” 을 “사고대응계획” 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위해관리계획서의 변경 등)” 을 “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41조제3항제2호” 를 “법 제23조제3항제3호” 로, “위해관리 계획서” 를 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” 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” 을 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비상계획” 을 “사고대응계획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1조제5항” 을 “법 제23조제8항” 으로, “위해관리계획서” 를 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” 로, “서면으로 알려야” 를 “제출해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해관리계획서” 를 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

서” 로, “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” 을 “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비상계획” 을 각각 “사고대응계획” 으로 한다.

제17조 제3항 중 “비상계획” 을 각각 “사고대응계획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최 미 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통합물관리팀장 조 일 장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황 재 필 (행정 224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, 해당 위험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「<u>화학물질 관리법</u>」 제7조의2에 따라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관리계획)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화학사고 대비·대응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<u>예방대책·비상대응계획</u>의 수립 및 이행과 이에 관한 사업장, 학교, 병원 및 시민 등 대상 교육·훈련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·③ (생략)</p> <p>제6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에 관한 주요 정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화학물질관리법」</u> <u>제7조의2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관리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<u>예방대책·사고대응계획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----- -----</p>

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제11조에 따른 비상계획의 수립·변경

4. (생략)

제7조(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, 환경교통국장, 상록·단원보건소장이 된다.

1. ~ 3. (생략)

4.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

가. 경찰서장

나. 소방서장

다·라. (생략)

5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11조(비상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화학사고의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안산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(이하 “비상계획”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.

② 비상계획에는 화학사고 대비·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사고대응계획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상록수·단원보건소장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
나.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
다·라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역화학사고대응 수립 등) ① -----

----- 법 제23조의4에 따른 안산시 화학사고대응계획(이하 “사고대응계획”이라 한다) -----

-----.

② 사고대응계획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략)

제12조(위해관리계획서의 변경 등) ① 시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여 위해관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클 경우

3. (생략)

②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요청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·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사항에 따른다.

제14조(협의회회의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비상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·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) ① --- 법 제23조제3항제3호-----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-----

-----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고대응계획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 법 제23조제8항-----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.

③ -----
----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-----
--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-----.

제14조(협의회회의 구성·운영) ① ---
- 사고대응계획 -----
----- 사고대응계획 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교육·훈련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해당 비상계획을 수정해야 한다.

제17조(교육·훈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사고
대응계획 -----

----- 사고대응계획 ----
-----.